

육아정책 소식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 운영...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1월 9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를 운영하고 권역별 의견수렴도 진행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른 개선과제를 논의하였으며,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 전문가, 교원, 관련 노조 등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입학 초(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방과 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중심의 지역단위로 개편하여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개발하여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단계(2025~)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안)은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안)

비전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목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		
전략	[1단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 마련 [2단계]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본격 시행		
	1단계('23~'24)	2단계('25~)	
	• (위원회·추진단) 격차해소 및 기반마련	• (교육부·교육청) 유보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 과정 적용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	▲	
조직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 지원	
재정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23)	제·개정 법률 시행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진료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저출생 등으로 진료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으로서,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인 소아 전문진료 기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됨에 따라 지역별로 충분한 중증소아 진료 기반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추진되는 특화 사업을 통해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도 강화된다.

이번 시범사업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년간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후 다음 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①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② 복지포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보 아버를 위한 육아가이드로 아빠 육아 고민 해결

보건복지부는 함께하는 육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빠가 알아야 할 육아 정보를 담은 「초보 아버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6판)을 1월 9일(월)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이번 육아 가이드는 소아청소년과 교수·아동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 이번 개정판(6판) 「초보 아버를 위한 육아가이드」에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지원 정책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 대상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 대상 월 35만 원이 지급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이 안내되어 있다. 개정판 책자는 임신·출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58,000부 배부될 계획이며, 육아 고민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대표 누리집(mohw.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었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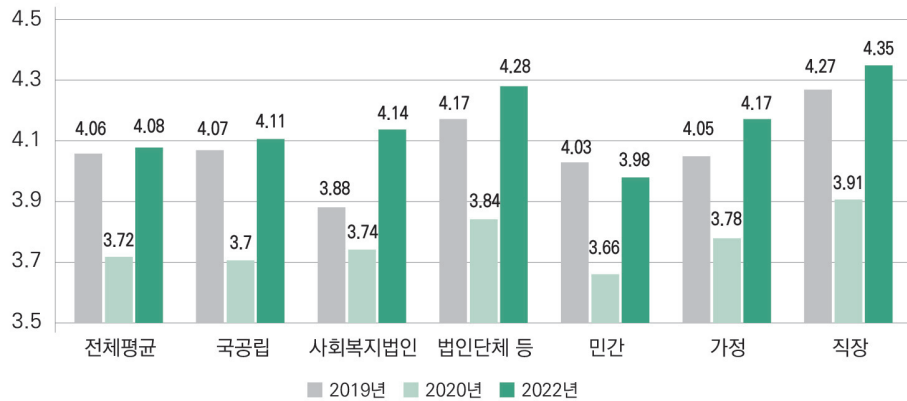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화)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 등 이용 특성과 이용만족도 및 보육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방문면접 조사로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조사인 보육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에는 어린이집 이용가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발달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41.0%, '생업/취업으로 직접 돌보기 어려워서' 39.4%,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가 14.6%로 조사되었다. 보육료 외에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 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5만 9,900원으로 2020년 5만 8,600원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다는 응답이 2022년 19.6%로, 2020년 12.5%에 비해 7.1%p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이용만족도(5점 척도)는 평균 4.08점으로, 2020년 3.72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이집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도 고려하여야 하며, 코로나 이전의 2019년 4.06점에 이어 상승세를 보였다.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만족도(5점 만점): '22, '20, '19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정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22.1%로 가장 높았으며, '육아휴직제 정착 등 고용관련 제도 개선' 20.7%, '보육·양육 관련 현금지원 확대' 17.8%,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설확충' 17.3%, '연장보육 등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15.8% 순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한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3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4월 3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배양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가족 등 흡연자를 대하는 태도와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만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창작동화 ‘노담밴드야 고마워’를 바탕으로 구연동화, 신체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버스형’교육과 ‘교실형’교육으로 진행한다. 전국 약 2,000여개 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4월 3일(월)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약 15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 내 보건소와 연계·협력하여 도서·산간 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가 운영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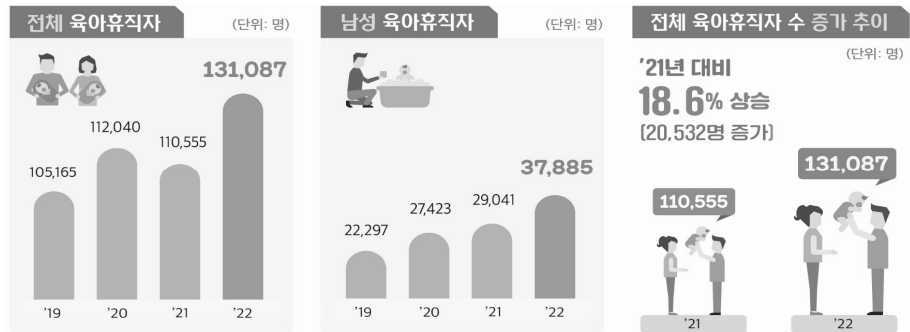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2월 16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과제	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
돌봄 인력 전문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 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 - ‘24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23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 - 우수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
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 -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도 확대

지난해(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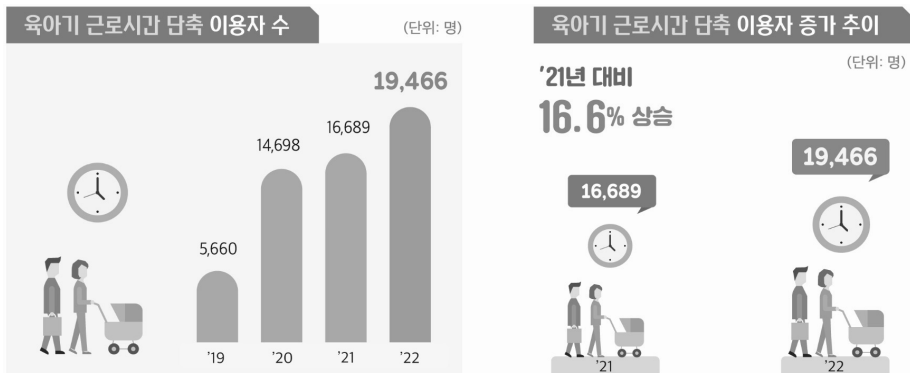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21년 110,555명 대비 18.6% 증가했다. 남성은 30.5%, 여성은 14.3%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 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 대체율 인상'이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기간은 9.4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늘어났다. 여성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고, 남성은 8.5개월로 전년과 동일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평균 사용시간은 주 12.2시간(일 평균 2~3시간)으로 성별로는 남성은 주 13시간, 여성은 주 12.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전 연령대에서 고루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 부담 경감

정부는 '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제도 예산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한다.

자녀 연령	육아휴직 기간	월 지급액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첫 3개월 200만원(특례), 이후 30만원
	3개월 미만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